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박 상 기

●법률 제1549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2022년까지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의”를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5조제4항에서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와 같은 정년퇴직 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이제까지 판사는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정년에 이른 날에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실무가 운영되어 왔음. 하지만, 이로 인해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판사가 정년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판부 변경이나 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재판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지 못하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정기인사에 맞추어 사직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 2회로 조정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판사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1월 31일, 7월 31일로 정하고자 함.

한편,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0861호)으로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되,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다만 부칙 제3조에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정원도 2022년까지는 2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음.

그런데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시행에 관한 「법원조직법」 부칙(제10861호) 제2조에 의하면, 적어도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재판연구원은 재판연구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년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2년으로 계속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이에 재판연구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한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한 재판연구원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과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또한, 재판연구원의 정원을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